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가족관계등록부 작성·정정의 대상과 신청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 작성·정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족관계등록부 작성·정정의 신청서 서식을 삭제하고 가족관계등 록예규에 규정하고자 함(안 제4조)
- O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요건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5조)
- 4.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

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

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 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4조제1항 중 "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청서"를 "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청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 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,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

별지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	제4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
의 신청절차) ① 가족관계등록	의 신청절차) ①
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	
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	<u>가족관계등록부</u>
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	의 작성(정정)신청서
<u>청서</u> 를 제출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	<u><삭 제></u>
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	
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	
<u>한다.</u>	
제5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	제5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
에 관한 시·읍·면의 장의 처	에 관한 시·읍·면의 장의 처
리) 시(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	리)
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	
시,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	
각각 구, 구청장 또는 구의 사	
무소를 말한다. 다만, 도농복합	
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•면지	
역에 대하여는 읍•면, 읍•면	
의 장 또는 읍•면의 사무소를	
말한다)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	
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청서를	

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,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 처리
- 2. (생략)

- 1.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되,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
 - 2. (현행과 같음)

<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 - 1771